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대표: 김중배 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가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찬바람 하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담당: 김철준, 장소영 797-8300)
제 목 일조권침해를 이유로한 건축금지가처분신청
날 짜 1997. 5. 23. (총 9 쪽)

보 도 자 료

우리집 안방의 햇살을 가로막는 건축은 이제 그만!
수서한아름아파트 참여연대 일조권침해하는 건축 건축금지가처분신청

일시 및 장소 : 1997. 5. 23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김철준(金七俊))은 1997. 5. 23.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 대표(鄭英珠 외 19인)들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나산-투루빌(오피스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나산 - 투루빌의 건축

나산 종합건설은 강남구 수서동에지상 20층의 3동의 대형 건물을 1995. 11. 10.부터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다.

(건축허가 및 건설과정은 별첨 소장의 2가 참조)

3. 아파트 주민의 피해

건물들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한아름 아파트 단지는 그 정남방에 높고 거대한 장벽을 치고 있는 결과가 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심각한 일조와 조망의 침해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신청인등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청이 시행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인접한 동의경우 대부분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도 안되며 그중 일부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4. 청구 내용 :

이에 주민들은 건설허가가 나기전후에 많은 항의와 진정을 하였으나 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어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찾게 되었고, 건축물을 지면으로부터

터 높이 37.9 m를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5. 소송의 의의

일조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복잡한 도시환경과 개발위추의 경제 정책때문에 갈수록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집안에 따사로운 햇살을 드릴 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최소한의 내용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도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번 제소는 적법하게 허가가 난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건축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일조권 침해의 범위를 확정짓는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일조권이 단순히 헌법상 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끝